호서교육기부센터 규정

제정 2023.02.06.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 및 소속) 본 기관은 호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호서교육기부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하고, 본교의 입학처 산하기관으로 한다.
- 제2조 (목적) 본 센터는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공 프로그램(전공특강, 전공체험)을 운영하고 지역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사업)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교육기부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 - 2. 교육기부프로그램의 예산관리 및 집행
 - 3.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
 - 4. 교육기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
 - 5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직제와 조직) ① 센터장은 호서교육기부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운영을 총괄하며,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직원(계약직 포함)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5조 (구성 및 운영) 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원, 교직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 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 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육기부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기부프로그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4 장 재정 및 기타

- 제7조 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과 타 기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 - ②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8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
제9조 (운영세칙)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3.02.0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